

---

# 국외출장 결과보고

## 제37차 APEC ECSG-DPS 회의 참가

(전자상거래운영그룹 개인정보보호분과)

---

2018. 2.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목 차

I. 요약 보고 .....	1
II. 출장 개요 .....	5
III. 참가 결과 보고 .....	7
1. 개요 .....	8
2. 주요 논의 내용 .....	8
3. 평가 및 계획 .....	19
IV. 붙임 .....	20
1. 회의 참석 사진 .....	21
2. 회의 사전 준비자료 .....	별첨
3. 회의 공식 문건 .....	별첨
3. 회의 결과 요약(공식) .....	별첨

# I. 요약 보고

# 2018 제1차 APEC SOM ECSG DPS 회의 참가 결과

## 1.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18. 2. 26(월) ~ 28(수),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리즈비
- 참석자 : APEC 각국 담당자 및 학계 · 민간기관 관련자 등
  - ※ 개인정보보호협력팀 김기석 팀장, 이정수 사무관
  - ※ 행안부 이윤숙 과장, KISA 권현준 단장, 송현준 주임 동행

- ※ 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 전자상거래 운영그룹으로, 역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정보보호 등의 이슈 논의 (종이없는무역, 개인정보보호 2개 소분과로 구성)
- ※ DPS (Data Privacy Sub-Group) : '03년 설립된 ECSG 산하 소분과로서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논의

## 2. 주요 논의 내용

### □ APEC CBPR 동향

- (개요) 싱가포르의 CBPR·PRP 가입 및 미국의 PRP 가입에 따라, 현재 **CBPR 가입국은 6개**(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이며, **PRP 가입국 2개**(미국, 싱가포르)
  - ※ PRP (Privacy Recognition for Processors) : 개인정보 처리수탁자의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CBPR로 평가)
- 대만, 필리핀, 호주가 올해 내로 CBPR 가입 신청서 제출 예정
- 국가 간 조사·집행 협력 협정인 **CPEA**(필리핀 가입으로 총 11개국 12개 기관 참여)를 통한 **공조 활성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
  - ※ FTC(미국)와 OPC(캐나다)는 CPEA를 바탕으로 장난감 회사인 Vtech 社の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해 서면·현장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6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보도함

- (시사점) CBPR 도입·운영은 FTA 등 서비스(전자상거래) 무역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국내 준비절차를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캐나다는 '15.3월 CBPR에 가입했으나, 아직 자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CBPR 제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내 인증기관도 지정하지 않았음

## □ APEC 회원국의 EU 협력 동향

- (일본) 일본은 '18.5월 적정성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18.3월까지 고위급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중임
- (미국) 미국은 EU와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정을 통해 부분 적정성 결정을 받았으며, '17.9월 EU 집행위와 연례 리뷰를 통해 프라이버시 쉴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함
- (캐나다) 캐나다는 既 적정성 승인 국가로, '01년 적정성 결정, '06년 적정성 재승인 이후, **GDPR** 시행에 따라 EU와 새로운 적정성 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내법과 GDPR 간 비교 작업 진행 중
- (기타 국가) 필리핀은 올해 내 적정성 평가 착수 의지를 밝힘

## □ 기타 논의 이슈

- (정보이동성) APEC DPS는 '15년부터 정보이동권(Data Portability) 연구반을 운영 중이며, 올해까지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임
  - ※ 호주는 '18.1월 은행업 분야에 정보이동권 관련 법제 마련
- (동의제도 개선) 캐나다 개보위(OPC)는 '동의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내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①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② 공개 정보 활용 ③ 동의 면제 요건 신설 등을 제안

### 3.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 **CBRP** 가입국가 증가추세 지속 ('18년 3개국 추가 가입신청 예상), 한국의 인증기관(AA) 승인 및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관심 증가
  - CBPR 운영 및 법제화가 EU 적정성 평가 및 전자상거래 국제 협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방향 결정 필요
- DPS 내 **CPEA**를 통한 조사·집행 협력 논의 활성화 움직임 증가
  - 「CPEA를 통한 협력 사례 설문조사」 등 CPEA 차원의 활성화 노력에 동참하고, 글로벌 사업자 제재 등 개인정보 규제기관 간 공조 이슈 발생 시 적극적인 협력 요청
- 2018 DPS 업무계획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breach notification) 등 개정(updated) APEC Privacy Framework에 포함된 새로운 항목을 **CBPR** 기준에 포함시키는 안이 포함됨
  - 우리 법제의 핵심적 조항 중 CBPR 미반영 요소를 **CBPR** 기준 (requirements)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의견 개진 필요
- DPS 내에서 새로운 기술 및 보호 개념에 대한 연구 활성화
  - 정보 이동권, 유효한 동의 개념,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연구 및 논의 증가
  - 지속적 동향 파악 및 연구반 참여 등 참여 확대 방안 고려
- **APEC-EU** 간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상호운용성 논의 지속
  - 한국은 **APEC CBPR** 가입국인 동시에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 중이므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할 필요

## II. 출장 개요

## 1. 출장 목적

- 2018년 제1차 APEC 고위관료회의(SOM3)의 무역·투자 위원회(CTI) 산하전자상거래 그룹(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 개인정보보호그룹(DPS, Data Privacy Subgroup)의 제37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정책 및 동향 공유

## 2. 출장 국가 :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리즈비

## 3. 출장 기간 : 2018년 2월 24(토) ~ 3월 2일(금) / 4박 7일

## 4. 출 장 자 : 개인정보보호협력팀 김기석 팀장, 이정수 사무관

※ 행안부 이윤숙 과장, KISA 권현준 단장, 송현준 주임 동행

## 5. 일 정

일 자	일 정	비 고
2.24.(토) ~ 2.25.(일)	항공 이동(인천 → 포트 모리즈비)	인 천
2.26. (월) 09:00~18:00	ECSG - DPS 비공식 회의 참석	포트 모리즈비
2.27. (화) 09:00~18:00	ECSG - DPS 공식 회의 참석	포트 모리즈비
2.28. (수) 09:00~18:00	ECSG - DPS와 EU 간 대화 회의 참석	포트 모리즈비
3.1.(목) ~ 3.2.(금)	항공 이동(포트 모리즈비→인천)	인 천

## 6. 선물 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X
- 선물 신고 여부 : X

### **III. 참가 결과 보고**

## 1. 개 요

- 일시 · 장소 : '18. 2. 26(월) ~ 28(수),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리즈비
- 참석자 : APEC 각국 담당자 및 학계 · 민간기관 관련자 등
  - ※ 개인정보보호협력팀 김기석 팀장, 이정수 사무관
  - ※ 행안부 이윤숙 과장, KISA 권현준 단장, 송현준 주임 동행

- ※ 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 전자상거래 운영그룹으로, 역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정보보호 등의 이슈 논의 (종이없는무역, 개인정보보호 소분과로 구성)
- ※ DPS (Data Privacy Sub-Group) : '03년 설립된 ECSG 산하 개인정보보호 소분과로서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논의

## 2. 주요 논의 내용

### 가. APEC CBPR 동향

#### (1) 가입국 및 신청국 현황

- (개요) 싱가포르의 CBPR·PRP 동시 가입 및 미국의 PRP 가입 승인
  - ※ 현재 CBPR 가입국 6개(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이며, PRP 가입국 2개(미국, 싱가포르)
  - ※ PRP(Privacy Recognition for Processors) : 개인정보의 처리수탁자의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CBPR로 평가)
- (미국) PRP 공식 가입에 따라 PRP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추진
  -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세분화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인증기관(AA) 추가 신청 모집 중

- o (일본) 현재 일본 내 CBPR 인증기업은 1개(Intasect)이며, 그간 1개 기업이 추가로 CBPR 심사를 신청, 이르면 3월 내 CBPR 승인 기대
- o (한국) CBPR 가입 승인('17.6월) 후 KISA를 국내 인증기관으로 지정, APEC에 인증기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17.12월) 국내 인증제도인 PIMS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계 운영 추진 중임을 발표
  - KISA는 CBPR 운영 및 주요 이슈 공유를 위해 해외 인증기관인 TrustArc(미국) 및 JIPDEC(일본)과의 협력 의사 표명
- o (캐나다) 국내 인증기관 모집 공고를 발표('17.1월)한 후 인증기관 신청을 기다리는 중이며, 국내 법제도와 비교 작업 및 CBPR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CBPR 인증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견 수렴 중
  - CBPR 규정 상 인증기관은 해당 국가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
- o (싱가포르) '17년 7월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CBPR·PRP 시스템의 동시 가입 공식 승인('18.2월)에 따라, 올해 CBPR 국내 인증기관 신청서를 JOP에 제출 예정임. CBPR 가입 추진과 함께 국내 인증제도(Trust Mark)를 개발했으며, CBPR과 동시 운영 계획을 밝힘.
  - 자국법 체계에 인증(certification) 제도를 추가함으로써 CBPR 및 PRP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 JOP(Joint Oversight Panel) : CBPR 가입 협의, 인증기관 승인, 권고 작성 등을 수행하는 '공동운영패널'로, 「APEC CBPR system Policies, Rules and Guidelines」 제6장에 따라 설치 ('18.2월 현재 미국, 일본, 한국)
  - CBPR·PRP 가입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CBPR 운영 모델을 개발 중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홍보 전략을 마련 중

## (2) 가입 추진국 및 희망국 현황

- o (대만) CBPR 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 CPEA 가입 추진, 올해 승인 기대. '16년 CBPR 가입 의사를 표명 이후, CBPR 50가지 인증기준 (program requirements)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의 복수 개인정보보호 집행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 중임
- o (필리핀) CPEA 공식 가입('17.9월) 이후, 감독기구의 역량 강화 및 법 집행력 확보 등을 통해 금년 중 CBPR 가입 신청 희망
- o (호주) 지난 해('17.11월) 공식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18.3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 중
- o (칠레) 국내에서 CBPR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3) CBPR 인지도 제고 및 홍보 방안

- o APEC Multi-Year Project(MYP) 예산을 활용하여, CBPR 인지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정확도 보완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업데이트 예정

## (4) 관리 및 책임성 연구반 (Administration and Accountability Study Group)

- ◆ 운영 및 책임성 연구반(Administrative and Accountability Study Group, AASG)
  - '16년 SOM3에서 구성된 연구반으로, CBPR 홍보, 집행력 강화 등 지속적·안정적 CBPR 운영방안 논의를 위해 격월로 전화회의 진행

- o (주요 현안) CBPR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홍보 자료 개발 등을 통한 CBPR·PRP의 혜택 안내, 인지도 제고, 접근성 향상 등
  - (미국) CBPR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홍보 전략에 대한 계획안을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

- (고유 인증번호 도입) CBPR 인증 기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목적의 고유 인증번호 도입 방안으로, 2017년 SOM3 당시 일본에서 제안해 CTI 공식 승인을 받음

※ 고유 인증번호 : “국가명AA기관번호-인증기업번호-인증서번호”로 구성  
 예) JP01-0001-01

- (인증기관 협력 강화) 일본은 세부 인증체계·인증 기준 공유 등을 통한 인증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
  - (일본) CBPR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효율적인 도구로 판단하며, CBPR 운영에 인증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인증기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기

## 나. 개정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 (1) 데이터 이동권 (Data Portability)

- 데이터 이동권 연구반은 2015년에 처음 구성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며, 올해 안으로 연구 마무리를 희망

※ 연구반 구성 :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캐나다, CIPL

- (주요 이슈) 데이터 이동권 도입 기대 효과 및 부작용, 국경 간 상호 운용 방안 및 필요성 등 분석
- (호주) 은행업 분야의 데이터 이동권 관련 법제 마련('18.1월)
- (홍콩) 아직 데이터 이동권을 국내법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토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 (2) 동의 개념 (Concept of Consent)

※ 기술 발전에 따른 동의기반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동의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OPC)가 발표

- 동의 제도 개선의 핵심 원칙으로 ① 유효한 고지(privacy notice), ② 정보주체의 자발적 의사표현을 증명하는 동의 양식(form of consent), ③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 감독\* ④ 동의 기술(technique) 개발 장려, ⑤ 동의로도 허용될 수 없는 보호 영역(NO-Zone) 확보, ⑥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이드 마련을 제시함

\* OPC는 아동과 청소년의 동의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 중

- 현행 동의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①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② 공개 정보 활용 ③ 동의 면제 요건 신설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및 예방적 집행(proactive enforcement) 제안

※ 비식별화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 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재식별의 위험성을 내포

- 동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기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 민간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재 규정 강화 등의 방안 제시
- OPC는 온라인 평판에 대한 보고서(Position on Online Reputation)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18.1월)하고, 의견 수렴 진행 중

#### 다. CPEA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 국경 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약정(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CPEA)  
- 회원국 간 정보공유, 효과적인 국경 간 협력 강화, 역내외 조사 집행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 법집행 협력 체계

- 필리핀 개보위의 가입 공식 승인('17.9월)으로 총 11개국 12개 기관이 가입중이며, 대만의 가입 신청 의사 확인
- CPEA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소개 및 향후 계획 공유

- (허위 주장) CBPR 허위 주장(false claim)에 대한 법집행 체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며, 답변 결과를 분석해 회원국에 공유 예정
- (CPEA 협력 현황) CPEA 협정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미활용 국가의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해 2018 SOM3에서 결과 공유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 예정

## 라. 2018년 ECSG DPS 업무 계획 (Work Plan)

### o CBPR·PRP 참여 확대 및 CBPR-GDPR 상호 운용 관련 논의

- (중국) CBPR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규모 및 현황 연구 제안
- (한국) CBPR은 APEC 권역의 인증체계이므로, 유출통지 의무 등 개정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15)의 항목들을 CBPR의 필수 인증 기준에 포함할 것 제안
  - ※ 의장은 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내용을 '18년 업무계획(안)에 반영
- (CIPL) 인도가 법제를 개발 중이고 APEC 권역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CBPR·PRP를 APEC 외 권역에도 홍보·전파하는 방안 제안
  - ※ 해당 의견에 대해 미국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CBPR를 전세계 프라이버시 표준화를 제안했으나, 러시아는 아직 모든 APEC 국가가 CBPR에 가입한 것은 아닌 만큼 외부 확산(outreach)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하여 향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함

### o 회원국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논의

- (한국) CPEA 협력의 모범 사례를 회원국 간 공유하는 방안 제안
- (일본) 인증기관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 강조

### o 러시아 측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힘

## 마. APEC 수행 사업

### (1) APEC Project

- (APEC 사무국) 프로젝트 관리 및 프로젝트 펀딩 관련 변동사항 안내
  - '18년도 신규 프로젝트 컨셉 노트는 변경 양식에 맞춰 3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각 회원국 평가 후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예정
  - 자체 펀딩 프로젝트의 경우, 별도의 기한 제한은 없으며 ECSG 승인 받아 추진 가능
- (MYP 현황) MYP 펀드로 지난해 마닐라 CBPR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17.12월), '18.7월까지 CBPR 홈페이지 개선 작업 완료 예정

### (2)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보고

- 기업들의 CBPR 관련 인식에 대한 미국-일본 공동 연구 결과 발표 ('17.8월~12월 간 진행, 미국과 일본 내의 총 29개 기업 대상)
  - 대다수의 기업들이 CBPR·PRP 가입 의사를 피력
  - 약 28%의 기업들이 CBPR·PRP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CBPR·PRP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과반수가 CBPR의 기대효과에 공감
  - 설문에 응답한 모든 기업들이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EU의 프라이버시 관련 원칙보다 효율적이라고 대답
  - 많은 기업들이 CBPR 인증 획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바. 각국별 동향 공유

### (1) APEC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공유

-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 완료
  - 개정 방향 :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은행업 분야 정보이동권 논의
- (캐나다) 민간 분야 개인정보보호법(PIPEDA)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동의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올해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 예정
- (칠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개설
-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영역별로 세분화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올해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일된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
  - ※ 중국은 '15년 정보유출 사고 발생 당시, 책임자에게 징역 3년형 부과
  - 중국은 '18.1.2일 개인정보보호 국가 표준 (national standard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B/T 35273-2017 Information Technology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Specification) 최종안을 발표함
- (홍콩)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비교 및 GDPR을 준수를 위한 인식 제고 노력 진행 중임
  -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간 ('18.1월)
  - '17년 데이터 유출 사고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및 인식이 점차 향상 중임

- o (일본) 지난해 ICDPPC에 공식 가입했으며('17.9월) GPEN, APPA 등 각종 국제 협의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o (파푸아뉴기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08년부터 추진 중이며 관련 법체계를 마련 중
- o (필리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인지도 제고 활동을 수행 중임. 개인정보 연차보고서 발간 및 '개인정보보호 주간 행사(National Privacy Protection Weeks)' 개최를 준비 중임
- o (러시아)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교육 활동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추진 중
  - (제도 개선)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정보 처리에 따른 규제 명확화
  - (법 개정) '17년 10월과 12월에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집행에 대한 연방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연방 정부 시행령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진행
  - (교육 활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특화 교육 실시 및 프라이버시 전자 도서관 설립을 통해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능 강화
- o (싱가포르) 기업의 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해 단순화한 '개인정보보호 키트(Data Protection Kit)' 개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도구(tool)도 마련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담당자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준수 이행 절차를 지원할 계획임
- o (태국) APEC·EU 등 국제기준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마련 중이며 현재 국내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음. 향후 CBPR 시스템 가입 관련 국내 논의를 진행할 예정

- o (미국) 캐나다 개보워(OPC)와 협력하여 Vtech 社의 법률위반에 대해 65만달러 벌금 부과,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허위 주장 기업 3곳을 적발했으며, AI, VR 등 신기술과 정보유출 사고를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예정('18.2월)

※ FTC(미국)와 OPC(캐나다)는 CPEA 합의를 근거로 Vtech 社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15년)을 발견하고, 서면 및 현장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조사 협력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보도함

## (2) 주요 국제 협의체 동향 발표

- o (ICDPPC) 지난해 홍콩에서 제39차 ICDPPC를 개최, 남아공·터키·일본 등 3개국이 추가로 가입했으며, 3개 결의안을 채택함
- o (GPEN) '10년 설립되어 49개국 66개 기관이 참여하며, 지난해 20회 이상의 전화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등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
  - 24개 규제기관이 함께 산업군 별로 400여개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o (APPA) EDPS(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CNIL(프랑스 감독기구), ICO(영국 감독기구)가 공동으로 GDPR 준수와 관련된 연구에 착수하고, 제29조 작업반이 APPA에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18.6월까지 완료 예정. 제49차 APPA 회의는 '18.6월 개최 예정임
- o (OECD) OECD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개정 작업 진행 중(5년 단위로 갱신하며, '18년 개정 예정), 올해 ICDPPC 행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주제로 워크숍 개최 예정

## 사. APEC - EU 협력 및 상호운용성

### (1) 회원국 별 GDPR 동향 공유

o (CIPL) EU 현지의 GDPR 대응 현황 소개

- 현재 EU에서도 GDPR 준비를 완료했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2개국 (독일, 오스트리아)에 불과하며, 9개 국가는 개정 초안을 마련한 상태
- 현재 오스트리아 감독기구 장이 EU 제29조 작업반 위원장으로 선출
- 제29조 작업반은 7개의 GDPR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며, 추가 2개 (동의, 투명성)의 가이드는 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 중이며, 인증 관련 가이드라인은 3월에 초안 발표 예정

※ 채택된 가이드라인 : DPO 임명, 데이터 이동권, 선임 감독기구,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동화된 처리 및 프로파일링, 과징금 부과, 잊힐 권리

- CIPL에서 수행한 설문 결과, 절반 이상 기업이 GDPR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을 배정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

o (캐나다) 캐나다는 '01년 처음으로 EU 적정성 결정을 받고, '06년 재승인 받은 이후, GDPR 시행에 맞춰 EU와 적정성 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내법과 GDPR 간 비교 작업 진행 중

o (일본) GDPR 시행 전 적정성 승인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CBPR도 고려되고 있음

o (미국) 현행 US-EU 프라이버시 실드와 GDPR 상 관련 조항을 검토, 지난해 EU 집행위와 연례 리뷰를 거치며 프라이버시 실드 개선에 대하여 EU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진행 중

**(2) CBPR - GDPR 상호운용성 연구반**

- o 일본, 미국, 美 인증기관 TrustArc와 EU가 참여 중인 연구반('15.8월~) 에서 회기 간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부터는 호주, 캐나다, CIPL이 참여하기로 함

### 3.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 **CBPR** 가입국가 증가추세 지속 ('18년 3개국 추가 가입신청 예상), 한국의 인증기관(AA) 승인 및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관심 증가
  - CBPR 운영 및 법제화가 EU 적정성 평가 및 전자상거래 국제 협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방향 결정 필요
- DPS 내 **CPEA**를 통한 조사·집행 협력 논의 활성화 움직임 증가
  - 「CPEA를 통한 협력 사례 설문조사」 등 CPEA 차원의 활성화 노력에 동참하고, 글로벌 사업자 제재 등 개인정보 규제기관 간 공조 이슈 발생 시 적극적인 협력 요청
- 2018 DPS 업무계획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breach notification) 등 개정(updated) APEC Privacy Framework에 포함된 새로운 항목을 **CBPR** 기준에 포함시키는 안이 포함됨
  - 우리 법제의 핵심적 조항 중 CBPR 미반영 요소를 **CBPR** 기준(requirements)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의견 개선 필요
- DPS 내에서 새로운 기술 및 보호 개념에 대한 연구 활성화
  - 정보 이동권, 유효한 동의 개념,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연구 및 논의 증가
  - 지속적 동향 파악 및 연구반 참여 등 참여 확대 방안 고려
- **APEC-EU** 간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상호운용성 논의 지속
  - 한국은 **APEC CBPR** 가입국인 동시에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 중이므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할 필요

## IV. 붙임

**【붙임 1】 회의 참석 사진**



**ECSG - DPS 공식 회의**



**ECSG - DPS 공식 회의 참석**

**【붙임 2】 회의 사전 준비 자료 : 【별첨 1】**

**【붙임 3】 회의 공식 문건 : 【별첨 2】**

**【붙임 4】 회의 결과 요약(공식) : 【별첨 3】**